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-800호

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영등포구고시 제2010-52호(2010. 9. 24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, 영등포구고시 제2016-77호(2016. 8. 18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된 이후 영등포구고시 제2017-82호(2017. 8. 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“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” 구역 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5월 31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사 업 명: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 치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5-40번지 일대 (38,502.9㎡)
3. 사업시행자: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장수)
4. 재결대상 물건(영업권):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
5. 열람기간: 2018. 5. 31.~6. 15.
6. 열람내용: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
7. 열람장소: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
8. 기 타

가) 관계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.

나)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영등포구 도시재생과(☎ 2670-3527)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